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78
----------	------

2017년 8월 3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8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최윤중 국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와 [별표 6] 사무위임규정에 신설 사업소를 추가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안 제3조)
 - 조례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를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로 개정
- 조례 [별표 6] 사무위임 규정 중 수임기관에 신설 사업소를 추가함 (안 별표 6)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무(조성계획 입안 또는 변경 및 설치·관리)와 도시공원 관리·운영(점용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예산 수반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예산수반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별도 의견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7. 6. 8. ~ 6. 28.)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 김 선 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과
- 본 조례 제31조 사무위임의 세부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별표6]에 신설되는 서울식물원과 문화비축기지사업소를 수임기관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상위법령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도시공원을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였음. 그러나 2016년 9월 23일 동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국가도시공원이 추가됨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이 2호와 3호가 변경되었음.
- 상위법 변경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사목’을 ‘제3조제1항제3호사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견이 없음.

2) 서울시 공원 현황

- 서울시 도시공원은 총 2,162개소로 도시자연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2015 공원현황 기준). 이중 생활권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구분되며, 주제공원은 체육, 묘지, 문화, 역사, 수변, 생태, 가로공원 등으로 구분됨.

- 동 조례 (별표 5)사무구분에 따라 면적 10만 m^2 이상의 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소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 m^2 이하의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도시공원 현황

구분	대분류	소분류	개소	면적
도시공원 (2,162개소)	도시자연공원		20	60.10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339	44.89
		어린이공원	1,294	2.24
		소공원	372	0.49
	주제공원	체육공원	4	0.13
		묘지공원	4	2.38
		문화공원	42	0.61
		역사공원	14	0.44
		수변공원	9	0.10
		생태공원	1	0.05
		가로공원	3	0.01

- 서울식물원은 생활권공원 중 근린공원이며, 문화비축기지는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할 것임.

3) 공원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기본계획, 공원 설치 및 관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 동 법에는 도시녹화계획(제11조), 녹지활용계약(제12조), 녹화계약(제13조),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제20조), 입장료 등의 징수(제40조)를 조례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는 법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0조와 31조에는 법에서 위임된 내용 이외에 공원 녹지 사무구분과 사무위임에 대한 내용이 있음.
- 동 조례 (별표 6)에는 사무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위임받은 자는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설치 및 관리 등 공원을 만들고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 이외에도 공원의 점용허가, 공원내 행위허가, 출입제한, 토지매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과태료 징수,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서울시장은 그 권한을 구청장, 3개 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에게 위임한 것임.
- 본 개정안은 신설조직인 서울식물원장과 문화비축기지 관리자에게 (별표 6)에서 언급한 공원관리 중요 사무를 위임하도록 한 것이나, 위임하는 사무가 신설 조직인 서울식물원장과 문화비축기지관리소장이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무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4) 공원관리 조직의 운영

- 서울시 공원과 녹지 관리를 위해 푸른도시국 산하에는 3급 관리자가 있는 서울로운영단과 서울대공원이 있으며, 서울식물원과 3개의 공원 녹지사업소는 4급 소장이 해당 공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공원녹지사업소는 지역별로 6~8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규모에 따라 5급~7급 소장을 배치하고 있음(5급소장 공원: 3개소).
- 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문화비축기지는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현재 공원 관리체계에서는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로 운영하여야 하며, 5급 소장이 관리하는 공원에 사무위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공원들과 관리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것임.

• 푸른도시국 산하 사업소 현황

사업소	관할구역	산하 관리공원
중부사업소(4급)	종로, 중구, 용산, 도봉,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중랑	북서울(5), 용산가족(6), 낙산(6), 중랑캠핑숲(6), 남산(6), 서울창포원(6), 경춘선숲길(6), 간데메(7)
동부사업소(4급)	성동, 광진, 강동, 서초, 강남, 송파, 동작, 관악	서울숲(5), 보라매(6), 양재시민의숲(6), 천호(6), 길동(6), 응봉(6), 율현(6)
서부사업소(4급)	마포,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 근천, 은평, 서대문	월드컵, 선유도(6), 서서울(6) 여의도(5), 경의선숲길(6), 푸른수목원(6),
서울대공원(3급)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4급)		서울식물원
서울로운영단(3급)		푸른도시국 산하 기관

※ 괄호 안은 소장 직급

- 문화비축기지는 2017년 9월 1일 개원하는 문화공원으로 ‘푸른도시국’과 ‘문화비축기지협치위원회’ 산하에 ‘문화비축기지사무소(이하 문화비축기지)’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8월 24일 보도).
- 본 공원을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시설로 운영하고자 별도 사업소로 분리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문화비축기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공원으로, 사무위임의 내용이 “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설치 및 관리 등 공원을 만들고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 이외에도 공원의 점용허가, 공원내 행위허가, 출입제한, 토지매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과태료 징수,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이므로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문화비축기지사업소에서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미숙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시민참여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주도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비축기지는 공원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신개념 공원운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것'과 '공원 프로그램 운영'은 별개로 조직구성 및 운영에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할 할 것임.

5) 공원관리 조직의 운영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제3호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4급이상인 자로 한정하고 있어 5급 소장이 관리하는 사업소의 경우 시의회에 출석·답변이 불가능하므로 시의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는 2017년 5월 17일 서울식물원을 사업소로 분리 하였으며, 2017년 8월 14일 시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문화비축기지를 사업소로 분리하는 개정안이 접수되었음.
- 소관 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2017년 8월 30일 상정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문화비축기지사업소를 별도 사업소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안전에서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서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에게 사 무위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 조례안의 내용은 수정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별표 6)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서울식물원장과 문화비축기지소장에게 사무위임 하는 내용은 서울식물원장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임.
- 문화비축기지는 신설된 문화공원으로 공원내 문화를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에 의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원을 지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행정기구로의 설치가 정해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사무위임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음.

- 공원은 일반적으로 조성 후 개원 1~2년 사이에는 하자보수 등 신규 공원으로서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성급히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공원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프로그램의 경험 축적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별표 6]의 사무위임에 신설 사업소로 설립된 서울식물원장은 포함하되, 사업소로 분리 되지 않은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은 삭제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78
----------	------------

제안년월일 : 2017년 8월 31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별표 6] 사무위임 규정에 신설사업소인 서울식물원장과 문화비축기소장에 사무위임 하도록 개정안을 접수하였으나, 문화비축기지가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지 않음에 따라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을 삭제하도록 함.

2. 주요 골자

- [별표 6] 사무위임에 수입기관으로 서울식물원장을 포함하되,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은 삭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별표 6〕 사무위임의 내용 중 수임기관에 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 ----- -----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개정안과 같음)</p> <p>1.~3. (개정안과 같음)</p>

현행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p> <p>가. 조성계획 (변경)입안</p> <p>나. 설치 및 관리</p> <p>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1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p> <p>구 청 장</p>
<p>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p> <p>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p> <p>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p> <p>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p> <p>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p> <p>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 같은 법률 제25조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p>

개 정 안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p> <p>가. 조성계획 (변경)입안</p> <p>나. 설치 및 관리</p> <p>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1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u>서울식물원장</u>, <u>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u></p> <p>구 청 장</p>
<p>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p> <p>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p> <p>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p> <p>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p> <p>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p> <p>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 같은 법률 제25조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u>서울식물원장</u>, <u>문화비축기지사업소장</u></p>

수 정 안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p> <p>나. 설치 및 관리</p> <p>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1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u>서울식물원장</u></p> <p>구 청 장</p>
<p>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p> <p>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 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p> <p>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p> <p>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 같은 법률 제25조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u>서울식물원장</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을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으로 한다.

[별표 6] 사무위임의 내용 중 수임기관에 서울식물원장을 포함하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의 도시공원 중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 ----- --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의 ----- ----- -----.</p> <p>1. ~ 3. (현행과 동일)</p>

현행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 가. 조성계획 (변경)입안</p> <p>나. 설치 및 관리</p> <p>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1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p> <p>구청장</p>
<p>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인가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p> <p>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p> <p>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p> <p>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p> <p>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같은 법률 제24조 ◦ 같은 법률 제25조 ◦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 ◦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32조 ◦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43조 ◦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 ◦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p>구청장, 동부·중부·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p>

개 정 안

[별표 6]

사무위임(제31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p>1.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서울특별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안·설치 할 수 있다)</p> <p>가. 조성계획 (변경)입안</p> <p>나. 설치 및 관리</p> <p>다.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결정</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19조·제22조 및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29조 및 제43조</p> <p>◦ 같은 법률 제16조</p>	<p>구청장, 동부·중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u>서울식 물원장</u></p> <p>구 청 장</p>
<p>2. 도시공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의 설치·관리인가</p> <p>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p> <p>다. 도시공원 원상회복명령</p> <p>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출입제한 등</p> <p>마. 토지매수의 청구 및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p> <p>바. 공원입장료·이용료·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점용료 강제징수</p> <p>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위반자에 대 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p> <p>아. 과태료 부과·징수</p>	<p>◦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21조</p> <p>◦ 같은 법률 제24조</p> <p>◦ 같은 법률 제25조</p> <p>◦ 같은 법률 제27조 및 제33조</p> <p>◦ 같은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제 32조</p> <p>◦ 같은 법률 제40조·제41조 및 제 43조</p> <p>◦ 같은 법률 제45조 및 제47조</p> <p>◦ 같은 법률 제49조 및 제56조</p>	<p>구청장, 동부·중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서울대공원장, <u>서울식 물원장</u></p>